##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



## 광 진 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공개청구) 방범 CCTV 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모니터링요원) 관련 문서

- 1.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3566041)호와 관련입니다.
- 2. 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 가. 청구개요
    - 1) 청 구 인 : 서〇〇
    - 2) 청구내용 : 방범 CCTV 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모니터링요원) 관련 문서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589] 공문서 정보공개 청구
  - 나. 정보공개 결정내용 : 부분공개
  - 다. 부분공개 결정 사유
    - □ 공개 공문 본문, 첨부 문서(1차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문)
    - □ 비공개 첨부문서 중 '1차 서류심사 및 채점 총괄표'는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 등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임. 따라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 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심사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 더불어 타 응시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속하는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

위와 같은 사유로 부분공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